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54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IT·BT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로 고도 기술의 도내기업 이전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 오창제3차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를 취득하고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는 도유림 확대조성이 전제됨에 따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며
-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증가추세에 있는 소방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넓고 협소한 소방청사의 이전 신축 불가피함에 따라
 - 영동소방서 및 청주소방서 보은파출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오창제3외국인기업전용단지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3-3(오창과학산업단지내)
- 단지규모 : 310,084.8㎡(93,800평)
- 사업기간 : 2005. 1~ 12
- 사 업 비 : 46,013백만원
 - 국 비(75%) : 34,510백만원(232,563.6㎡)
 - 도 비(25%) : 11,503백만원(77,521.2㎡)
- ※ 310,084.8㎡중 25%인 77,521.2㎡를 지분으로 취득

《 도유임야 확대조성 》

- 위 치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4필지
- 매입규모 : 202ha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 117ha
 -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4-1 19ha
 -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56-1 24ha
 -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96 42ha
- 사업기간 : 2005. 1 ~ 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3,000)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등 2필지
- 사업내역
 - 부지매입 : 3,154.0m²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3,077.0m²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93-2번지 77.0m²
 - 건물신축 : 지상 2층, 1,320.0m²(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사업기간 : 2005 ~ 2006(2년간)
- 사 업 비 : 1,970백만원(도비 1,970)

《 영동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 등 5필지
- 사업내역
 - 부지매입 : 6,480.0m²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18-3번지 213.0m²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1-2번지 423.0m²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 4,648.0m²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4번지 264.0m²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5번지 932.0m²
 - 건물신축 : 지상 3층 3,300.0m²(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사업기간 : 2005 ~ 2006(2년간)
- 사 업 비 : 4,500백만원(도비 4,500)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 고
계	20,973,485 (도비 20,973,485)				
오창제3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	11,503,485 (도비 11,503,485)				
도유임야 확대조성	3,000,000 (도비 3,000,000)				
청주동부소방서 보은 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1,970,000 (도비 1,970,000)				
영동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4,500,000 (도비 4,500,000)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수정)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처 별	계	토지	4	2,113,228.2㎡ (639,251평)	15,560,485			4	2,113,228.2㎡ (639,251평)	15,560,485
		건물	2	4,620.0㎡ (1,397평)	5,413,000			2	4,620.0㎡ (1,397평)	5,413,000
		기타								
	매입	토지	4	2,113,228.2㎡ (639,251평)	15,560,485			4	2,113,228.2㎡ (639,251평)	15,560,485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2	4,620.0㎡ (1,397평)	5,413,000			2	4,620.0㎡ (1,397평)	5,413,000
		기타								
연 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진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계	토지	3 건	2,113,228.2㎡ (639,251평)	15,560,485 (15,560,485)			
	건물	2 건	4,620.0㎡ (1,397평)	5,413,000 (5,413,000)			
	기타						
1	토지	청원 오창 각리 663-3	77,521.2㎡ (23,450평)	11,503,485 (11,503,485)	2005	오창제3차외 국인기업전용 단지부지매입	매 입 (주)하이닉스
	건물						
	기타						
2	토지	괴산 사리 방축 산28-12 등 4필지	2,026,073.0㎡ (202ha)	3,000,000 (3,000,000)	2005	분수 국유림 수익분배금 으로 도유임야 확대조성	매 입 (사 유 자)
	건물						
	기타						
3	토지	보은 보은 이평 93 등 2필지	3,154.0㎡ (954평)	370,000 (370,000)	2005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 이전 신축	매 입 (사 유 자)
	건물	"	1,320.0㎡ (399평)	1,600,000 (1,600,000)	"	"	신 축
	기타						
4	토지	영동 영동 매천 120 등 5필지	6,480.0㎡ (1,960평)	687,000 (687,000)	2005	영동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매 입 (사 유 자)
	건물	"	3,300.0㎡ (998평)	3,813,000 (3,813,000)	2005~ 2006	"	신 축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외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2 ~ 5호 생략